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(강기윤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1822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5. 8.

발의자 : 강기윤 · 김선교 · 조명희
서병수 · 김용판 · 서범수
백종현 · 이종성 · 전봉민
구자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어린이집의 등급별 평가결과에 따른 행·재정적 지원연계는 물론, 법 위반 사실 등을 근거로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등 규제적 성격이 강함.

이러한 관 주도의 구조적 질 중심 평가방식은 폐쇄적·수동적인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현상은 물론 지도점검, 부모모니터링 등 타 사업과 중복된 품질관리라는 지적이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교사-영유아 상호작용 등 과정적 질 중심 및 어린이집의 자율적 품질관리에 기반한 평가제도 개편을 통해 평가결과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.

이에 현행 등급제 평가결과 방식의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변경하여 영유아의 안전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평가의 본질적 취지에 부합한 어린이집 평가로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2항제1호, 제30조

제2항부터 제6항까지, 제44조제4호의6, 제51조의2제1항제4호).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 중 “평가척도 개발”을 “평가”로 한다.

제30조제2항 중 “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”을 “어린이집 운영 등 필요한 지원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결과”를 “어린이집 평가결과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”를 “그 평가를 보류하거나 다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제1항의 평가등급을 조정”을 “평가 후 필요한 지원을 제공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제5항”을 “제4항”으로, “확인점검의 대상 및 방법, 그에 따른 평가등급 결정·조정”을 “평가결과의 보류 및 재평가”로 한다.

제44조제4호의6 중 “평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확인점검을 받은 경우”를 “평가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”로 한다.

제51조의2제1항제4호 중 “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”를 “평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평가지표 변경 등에 따른 적용례) ①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평가대상으로 선정되어 진행 중인 평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대하여 평가대상 선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고지하여야 한다.

제3조(평가인증 또는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 또는 평가인증을 받아 그 평가 결과가 유효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동안 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) ① (생 략)</p> <p>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발</p> <p>2. ~ 6. (생 략)</p> <p>③ ~ ⑦ (생 략)</p> <p>제30조(어린이집 평가) ① (생 략)</p> <p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,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p>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</p>	<p>제8조(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.</p> <p>1. ----- 평가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0조(어린이집 평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.</p> <p>----- 어린이집 운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③ -----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-----.</p> <p>④ -----.</p> <p>----- 그 평가결과를 보류하거나 다</p>

